##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58 발의연월일: 2024. 12. 3.

발 의 자:권영세·이성권·김소희

김재섭 · 서일준 · 고동진

안철수 · 구자근 · 강대식

인요한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하도록 규정하고,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 석방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이 수사종결권을 가지 게 되었는바, 현행법에는 사법경찰관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를 종결하는 경우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는 규정이 없어 강제퇴거대상자의 신병 확보에 공백이 발생한 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사법경찰관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피의자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석방 과 동시에 인도하도록 하여 신병확보에 공백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임 (안 제86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게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에는 석방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병인도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6조(신병의 인도) ① (생 략)	제86조(신병의 인도) ①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② 사법경찰관은 강제퇴거명령
	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게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에는 석
	방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
	에게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
<u>②</u> (생 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